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전용기·전재수·이동주

임종성 · 김정호 · 송갑석

이원택 • 고영인 • 박용진

신정훈 · 강선우 · 정청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등원격 수업이 실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4차에 나누어 등교를 추진함.

그러나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했고 특히 등교일자의 차이로 인해수업 인정이 미비할 경우 학년별로 차등적인 수업일수 인정 문제가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해외의 경우 이미 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며, 우리 또한 교육의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가며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 등) ①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
	한 특례 등) ① 학교장은 감염
	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
	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
	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
	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